예 산 총 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12,568,974	15,377,069
일반회계	449,682,640	13,490,479
특별회계	62,886,334	1,886,590
공기업특별회계	27,652,706	829,581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7,652,706	829,581
기타특별회계	35,233,628	1,057,009
수질개선 특별회계	11,227,634	336,829
주택사업 특별회계	6,345,225	190,357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65,900	25,977
자활기금 특별회계	2,058,097	61,743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1,957,939	358,738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550,883	16,52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99,007	8,970
기반시설 특별회계	68,513	2,055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860,430	55,81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81,557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 한도액은 19,4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5,377,069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2) 재무활동 경비
(3)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